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e.go.kr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II)

2016년 2월 22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개요

증 공개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가 공개대상정보입니다.

통계조사내용이 모두 공개되나요?

- 통계조사내용 중 국가안전 및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

사업장별 조사결과가 한번에 모두 공개되나요?

- 사업장에서 정보공개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중 사업장의 일반현황과 화학사고 발생건수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별 취급량 정보 등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적은 정보를 인터넷(화학물질안전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우선 공개합니다. 이를 기본공개라고 합니다.
- 그 외의 정보는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서식 제1호(정보공개청구서)

◎ 공개요구가 들어온 후에 비공개 신청을 해도 되나요?

- 개별공개**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본공개 대상 정보는 2016년 상반기에 심의하고,
 추가 공개요구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후에
 사전에 심의신청서가 제출된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기본공개는 '16.7.1부터 공개 (다만, "심의중"이거나 심의후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내용은 비공개)

개별공개는 공개청구 이후 15일 이내에 공개 (다만, 공개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후 120일 이내에 공개)

영업비밀로 인정받은 경우 자료보호기간은 5년인가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호가 유지됩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

- 심의신청서와 자료보호요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심의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자료보호요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여부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와 자료보호요청서는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 심의신청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고, 심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자료보호요청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75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 ※ 심의신청서 접수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❷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첨부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시고,
 - 심의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와 보호요청항목의 목록 (또는 보호요청항목을 표시한 통계조사표 사본)을 우선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업비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또는 자료보호신청서는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 환경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환경법령에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료보호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서와 자료보호요청서>

심의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결과 중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영업비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자료보호 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하는 각종 자료(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통계조사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요청하는 서류로, 자료를 보고·제출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 (예: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보호요청은 실적보고를 제출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자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계조사표 중 기본공개·개별공개 예시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구성성	성분	취급	급량
제품명	성분명	함량(%)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 매량
RR-1	Ch-1	100	2톤	2톤
RR-2	Ch-2 Ch-3	60 40	3톤	2.5톤
RR-3	Ch-1 Ch-2 Ch-3 Ch-4	30 20 - -	1.5	1.5톤
ļ. _[
	_	이하 생	략	
PP-1	Ch-1 Ch-2	60 40	1.5	1.5
PP-2	Ch-1 Ch-3	20 80	2.5	2.5톤
PP-3	Ch-2 Ch-4	80 20	1톤	0.5톤
		이하 생	<u></u> 략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 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80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성분내역을 알지 못하여 성분보유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기본공개·개별공개 예시 (1)

◎ 비공개 신청이 없다면 화학물질 취급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됩니다.

<기본공개>

제품정보 제품명 유해화학 물질 혼합물 여부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혼합물질, □ 단일물질 RR-3 생 ■ 혼합물질, □ 단일물질 PP-1 ■ 혼합물질, □ 단일물질 략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혼합물질, □ 단일물질

이하 생략

물질명 (CAS No	o.)		해화학 물 질 여부		연간 입고량	시	간 ·용· 배량
Ch-1 (000-00-1)							
Ch-2 (000-00-2)			생	г			1
Ch-3 (000-00-3)			생 략		생	략	
Ch-4 (000-00-4)		l					,
	이	하	생략				

<개별공개>

			구성성분		
제품명		성분명	함량((%)	유해화학물질 여부
RR-1		Ch-1 (000-00-1)	100%		— 생 —
RR-2		Ch-2 (000-00-2) Ch-3 (000-00-3)	60% 40%		야 략
RR-3		Ch-1 (000-00-1) Ch-2 (000-00-2) Ch-3 (000-00-3) Ch-4 (000-00-4)	30% 20% - -		생
PP-1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Ch-1 (000-00-1) Ch-2 (000-00-2)	60% 40%		략
PP-2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Ch-1 (000-00-1) Ch-3 (000-00-3)	20% 80%		생략
PP-3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П	Ch-2 (000-00-2) Ch-4 (000-00-4)	80% 20%		<u> </u>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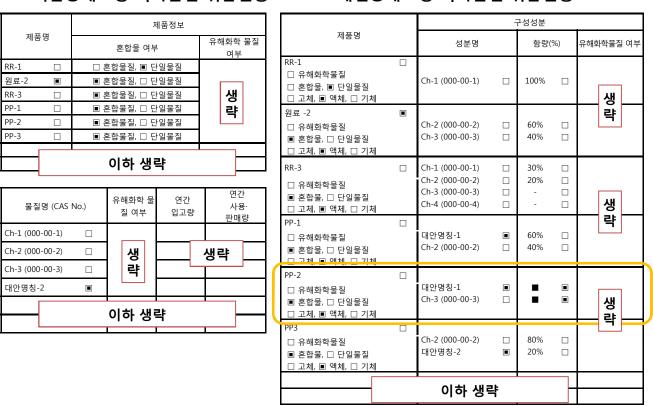
② 개별공개는 청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함

• 예: "제품 PP-2"의 성분과 성분별 함량을 공개청구한 경우, 노란 박스 내부만 공개됨

기본공개·개별공개 예시 (2)

- 비공개 신청항목이 아래와 같고, 심의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면,
 - 기본공개대상항목 중 원료 RR-2의 제품명, Ch-4의 명칭
 - 개별공개대상항목 중 PP-1과 PP-2의 성분 중 Ch-1의 명칭, PP-2의 성분별 함량 PP-3의 성분중 Ch-4의 명칭
- 《 <기본공개 > 중 화학물질 취급현황

<개별공개> 중 화학물질 취급현황



개별공개는 청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함

- 예: "제품 PP-2"의 성분과 성분별 함량을 공개청구한 경우, 노란 박스 내부만 공개됨
- ❷ Ch-1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구성성분으로써 비밀보호 요청
 - Ch-1이 어느 제품에 포함되는지는 비공개되나,
 해당 사업장에서 Ch-1이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은 공개
 - 만일 총량으로 공개되는 기본공개대상 항목에서도 비공개를 원할 경우, 기본공개대상 항목에서 Ch-1의 명칭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 제품명 또는 화학물질명칭(CAS no.)을 비공개요청하는 경우,
 - 정확한 물질명칭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예: 삼산화납 → 납화합물)
 - 총칭명칭으로도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완전 비공개를 요청하여야 함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

영업비밀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 영업비밀로서의 비공개 여부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4명)과 민간 전문가(5명)로 구성되었고,
- 심의위원은 심의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누설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 제1174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252호)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A의 질을 높이기 위해 AA-1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사유)
- AA-1의 사용으로 경쟁사로부터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경제성·유용성)
- AA-1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비공지성)
-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 정보공개심의신청서에 자료보호 신청 항목을 나열하고,
- 해당 항목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이유를 명시하고,
- 영업비밀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항목별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 부문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제품B의 성분·함량을 영업비밀로 주장한다면, 제품B의 성분·함량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경제성·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정보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접근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대상 정보에 제한이 있나요?

- 제품명, 성분(물질)명, 제품의 구성성분·함량, 성분보유자정보, 수출에 관한 정보, 입고· 출고량 범주 등 모든 통계조사항목에 대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대상 자료(항목)에 대해 3가지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심의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서식이나 양식이 있나요?

- 심의신청서에 첨부할 자료(심의신청 요지, 이유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정해진 서식이나 양식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증빙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정보)을 나열하고, 각 항목별로 심의신청이유와
 3가지 영업비밀 요건별로 주장하는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품의 성분과 성분별 함량을 동시에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두 항목 모두 비공개되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나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은 모두 공개대상입니다.
- 따라서 제출한 내용 중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제조사가 함량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분보유자를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함량정보에 대해 심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또는 제조사가 해외회사로 영업비밀 증빙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심의신청 이유서와 영업비밀 3가지 요건은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문서를 보완서류로 첨부할 수 있으나, 중요부분은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법, 내용

◎ 기본공개는 어떤 형태로 공개되나요?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정보를 화학물질 안전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의 공개형태와 유사하게 사업장별, 지역별, 물질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화학물질 정보공개시스템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운영됩니다.

❷ 개별공개는 청구자에게만 공개하나요?

 청구자가 요청한 수령방법(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만 공개합니다.

◎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매량은 제품별, 물질별 모두 공개되나요?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총량으로써 연간 입고량 등이 공개되며, 제품별 연간 취급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급하는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성분보유자 정보를 제출한 경우, 물질별 총량으로써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별 연간 입고량 등이 범주로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현황은 물질별로 공개되나요?

■ 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전체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현황이 공개됩니다.

기본공개 내용 중 화학사고 발생현황에는 행정처분받은 사고만 공개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합니다.

개별공개 내용 중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은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작성시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되나요?

 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제1차 화학물질 조사 결과 정보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성분보유자 정보도 공개되나요?

- 성분보유자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 공개청구의 사유가 타당하고, 성분보유자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없거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분보유자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 문의사항 (1)

- 화학물질통계조사 결과, 성분보유자로 지정되어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분보유자가 제출한 정보도 공개되나요?
 - 성분보유자가 제출한 구성성분 등의 자료에 대해 비밀보호를 받고 싶다면,
 성분정보를 제출한 후 환경청장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보유자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개별공개 청구가 있고, 청구사유가 타당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분보유자에게 공개계획을 알리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특허품에 대해 전부 공개하여야 하나요?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될 수 있나요?
 - 특허품은 비공지성의 요건을 상실하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일 특허출원을 하였더라도 특정부분에 대해 비공지성이 유지된다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만으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이유서와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을 모두 증빙하는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급사와 특정 인원만 알고 있는 정보(비공지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 이를 준수하고 있고(비밀관리성),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있다면(경제성)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를 다른 회사도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공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 해당 정보를 알게된 경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당 물질 또는 성분별 함량비율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혹은 해외 제조사와 언제 어떤 내용의 계약 을 맺어 해당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 문의사항 (2)

- ❷ 성분보유자("A"사)가 "B"사에게 성분정보를 알려주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맺었습니다. "B"사가 성분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A"사가 비밀보호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한 자("B"사)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성분정보의 소유자(A사)가 B사에서 제출한 성분정보에 대해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사가 제출한 성분정보를 원래 보유한 사업장이 A사이고, 성분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A사와 B사가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추가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의 내용만으로는 '성분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성분정보를 제공한 자(A사)가 상대 회사(B사)의 심의신청서 제출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B"사가 "A"사의 위탁을 받아 <갑>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며, "A"사는 제품 <갑>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형태에서, "A"사와 "B"사간에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입 니다. 제품 <갑>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품 <갑>의 정보를 통계조사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사에서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위 경우, 만일 A사와 B사 모두 제품 <갑>의 정보를 통계조사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두 회사 모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한 회사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회사에서 제출한 통계조사표 내용의 결과로써 <갑>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품 <갑>에 대하여 B사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A사가 판단하였다면, A사는 'B사가 제출한 통계조사표 작성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A사는 B사가 제출한 정보를 원래 보유한 사업장이 A사이고, 이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A사와 B사가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 2015년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20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017년에도 정보공개심의신청을 다시 하나요?
 - 2017년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7년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타 주요 문의사항 (3)

❷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할 기회가 있나요?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것인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과 각 항목별 이유와 영업비밀 3가지 요건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의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때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만일 추가자료 요청을 받지 못한 채 공개결정이 된 경우, 심의결과서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명서를 제출할 때에 서류가 보완되지 않거나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하지 않습니다. 보완 또는 추가서류 제출이 15일 이내에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개 및 개별공개시 공개결정이 통보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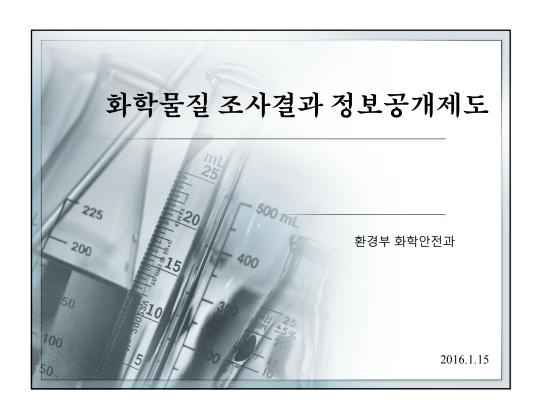
-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기본공개를 하기 전에 공개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정보의 경우, 심의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공개결정'을 통보
 -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정보의 경우, 심의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공개결정'을 통보하고(1차), 1차 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하여 재심의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 '공개결정'을 통보합니다(2차)
-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개별공개 청구'시 청구된 사실만 통지하고,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통지한 후, 기본공개와 같이 심의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 '공개결정'을 통보합니다.
-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사무소와 공장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계조사 시사무소와 공장을 분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심의신청서도 사무소와 공장을 구분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통계조사표에 기재한 주소지명을 토대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 ○○사무소, ○○회사 ○○공장)
 - 다만, 사무소와 공장에서 통계조사표에 작성한 내용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실 경우 사무소 또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또는 공장)에서 "사무소와 공장에서 취급하는 △△ 제품에 대한 일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우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hemnavi.or.kr)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6

■ 산업계 도움센터 : 02-6050-1304, 1308, 1313





통계조사결과 공개되는 정보 정보공개 심의절차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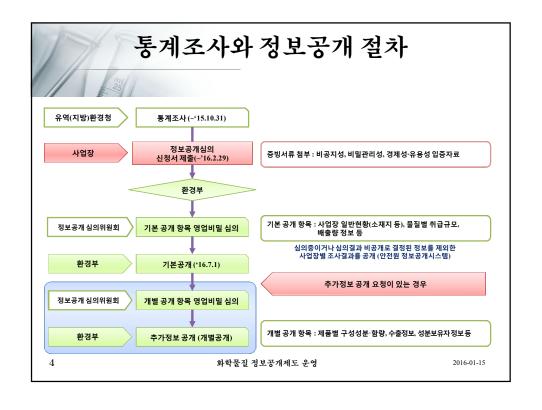
화학물질 통계 · 배출량 조사 결과 공개

- ☑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 (화관법 제12조)
 - 국가안전, 영업비밀 등은 비공개
 - 공개여부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당연직(4명),위촉직(5명)구성(15.9)

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정(15.8.29, 환경부 훈령 제1174호)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15.12.31, 환경부 고시 제2015-252호)



기본공개와 개별공개 -1

- □ 화관법상 통계·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관보 게재,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 → 모든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
- ☼ 공개 및 심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하여 운영
 - 기본공개: 사업장별로 1차 공개되는 정보
 - 사업장 일반현황(소재지 등), 물질별 취급규모, 물질별 배출량정보
 - 개별공개 : 기본 공개된 항목 외의 정보
 - 제품별 구성성분/함량, 수출정보, 성분보유자 정보 등

 5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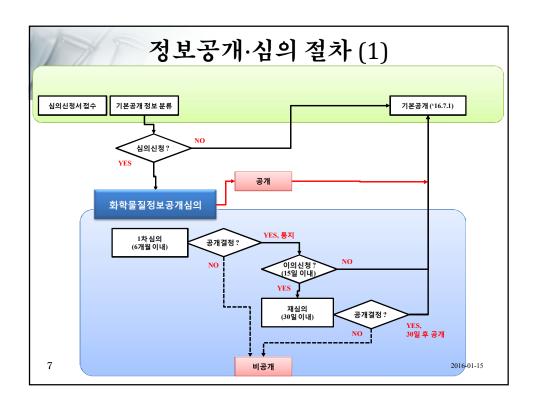
기본공개와 개별공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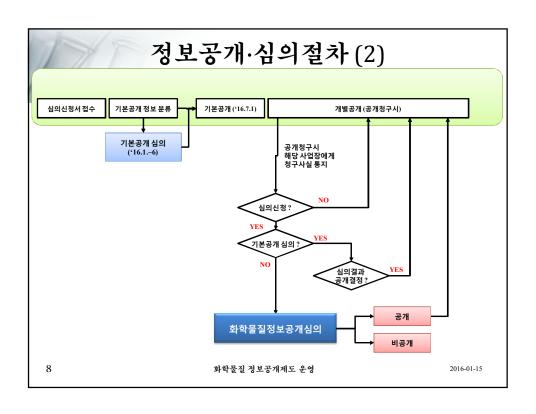
- 🚨 공개시기와 심의시기는 다르나, 비공개 요청은 같이
 - 기본공개: '16.7.1부터 공개
 - 다만, "심의중"이거나 심의후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내용은 비공개
 - 개별공개 : 공개청구 이후 15일 이내
 - 공개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후 120일 이내에 공개 (심의 → 소명서 제출 → 재심의 → 추가서류 제출 → 추가심의 → 공개)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6





정보공개 심의신청

- ◎ 통계조사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
 - 제품명, 성분(물질)명, 제품의 구성성분/함량, 성분보유자정보, 수출에 관한 정보, 입고/출고량 범주 등
 - 비공개 요청항목에 대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부문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
- 🚨 공개시기와 심의시기가 다르더라도 비공개요청은 같이
 - 보호받고 싶은 기본공개·개별공개 항목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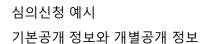
 9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및 항목

수입/구매 또는 제조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하여 판매/수출하는 **화학물질** 사용/제조 중에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

- ☼ 화학물질 통계조사 항목
 - 원료, 부재료, 제품 등의 성분, 함량, 입고량, 출고량 등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이 있다면 비공개 심의신청 가능
 - 성분보유자 정보, 수출에 관한 정보 등
 - 상대국가,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다면 비공개 심의신청 가능

10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및 심의신청 대상자료

원료, 부재료 (사용, 구매, 수입)



사업(공정)



제품 (제조, 판매, 수출)

사용하는 물질의 명칭 성분보유자 정보 제품의 성분, 함량 수출에 관한 정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명칭이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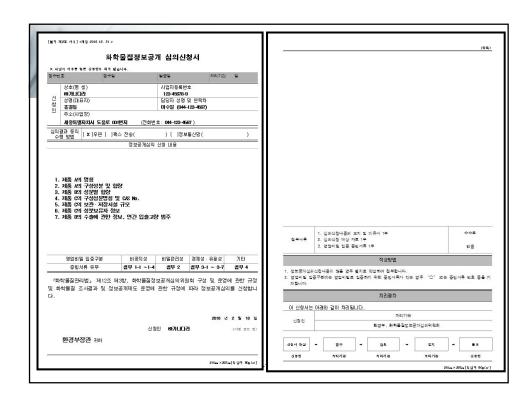
- ™ 원료·부재료 등의 명칭, 입·출고량, 용도, 성분보유자 정보 등
- 📮 제품의 성분, 함량, 입·출고량, 수출에 관한 정보 등

다만,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제조·판매하는 제품명칭은 비공지성 인정이 안되므로 영업비밀 불가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12



심의신청 예시(1)

- 🚨 심의신청 대상자료와 이유서 작성
 - 대상자료: 제품A의 생산에 사용하는 AA-1의 제품명
 - 신청이유: 생산하는 제품A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업장과 달리 AA-1을 사용(AA-1의 특정 용도)
- 🚨 아래 각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AA-1의 사용으로 경쟁사로부터 경쟁적 우위(원가절감, 품질향상 등)를 점할 수 있고, (경제성/유용성)
 - AA-1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비공지성)
 -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 (비밀관리성)

심의신청 예시 (2)

™ 제품A를 만들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 원료(1) 또는 부재료(1)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 향상 또는 원가절감 등

전제조건 (배경)

• 원료(1) 또는 부재료(1)의 사용을 **개발하기 위해** "000"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며, 상대회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000"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상대회사가 이를 알게 된 경우 경쟁력이 어느 정도 저하될 것이라는 등

경제성/유용성

• 어떻게 개발·취득하였고(R&D에서 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등), 언론/잡지 등에 노출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특정 부서의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고

비공지성

• 해당 정보에 대한 보안규정을 마련/준수하고, 해당 문서에 "기밀" 표시 를 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

비밀관리성

15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심의신청 예시 (3)

- ☑ 제품A의 성분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분별 함량의 차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
- → 제품A의 함량에 대한 정보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가진다면 영업비밀로 보호신청(공개심의 신청)할 수 있음

16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 심의신청(비공개요청)

- 월 심의신청서 : 1부
 - 비공개 요청항목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ਊ 증빙서류
 - 각 항목별로 3가지 부문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있어야 함
 - 예시

요청항목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	비고
제품A의 명칭, CAS No.	자료 #1	자료 #2	자료 #3	심의 가능
제품B의 구성성분	자료 #4	자료 #2	자료 #3	심의가능
제품C의 성분별 함량	자료 #5	자료 #2	자료 #6	심의가능
제품D의 구성성분	자료 #7	자료 #8	-	심의 불가

17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공개정보 예시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명	00 🕾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홍길동 000-000-	-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	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	책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	류		수질배출시설종류			

본 정보는 작성자인 OO㈜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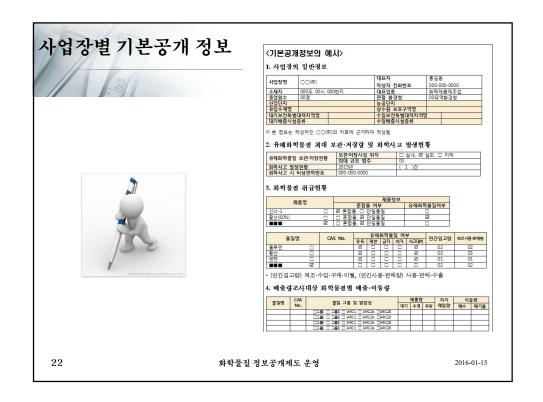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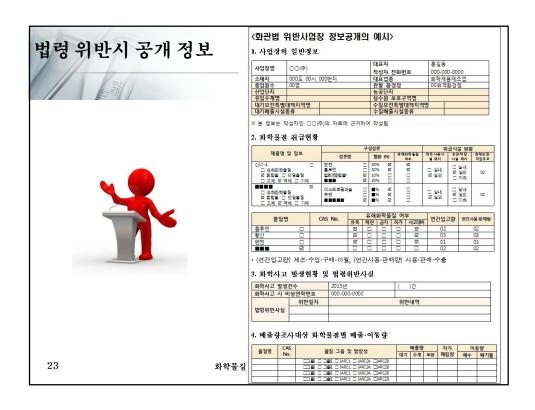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위치	□ 실내, □ 실외, ■ 지하			
보관·저장현황	최대 규모 범주	03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5년	(1)건		
화학사고시 비상연락번	호	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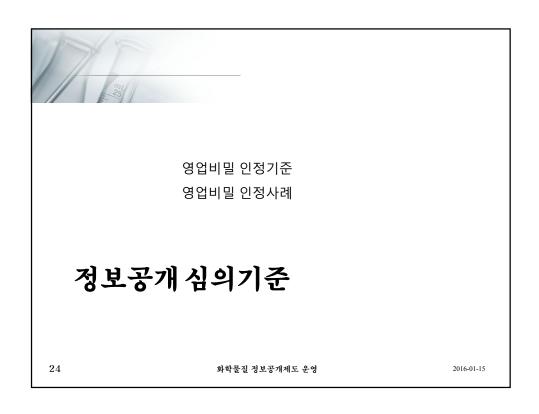
Š	하학물질 추	급현	현황	공	'개정	J보·	예.	ス				
	제품명			혼합물여	제품정보	유해화학	무지어!					
	황산(60%)		혼 [:]	온입물 어 합물질, 團 「	<u> </u>	뉴애와익		Τ				
	신너-1		■ 혼	합물질, □ 년	단일물질]					
			■ 혼	합물질, □ □	단일물질]				**********	······································
	무지면(CAS No.)				유해화학물질 여부					,	연간 입고량	연간
	물질명(CAS No.)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	골질		사용·판매량	
	톨루엔(108-88-3)]		•	Ļ	02	02
	황산 (7664-93-9)					П				٠,	03	02
				연간입고링	└──── 냥: 제조, 수입, 판매량: 사용,	구매, 이월				급링	범주	
				구분	중량(톤/년) 또는	는 부피단위(m',	/년) -	구분	중량(톤/	/년) 모	는 부피단위(m'/	'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0.5 ~ 1.0 08						0 ~ 200	
				03		~ 1.0		09			0 ~ 5,000	
1	9			05		~ 5.0		10			000 이상	6-01-15
				00	2.3	3.0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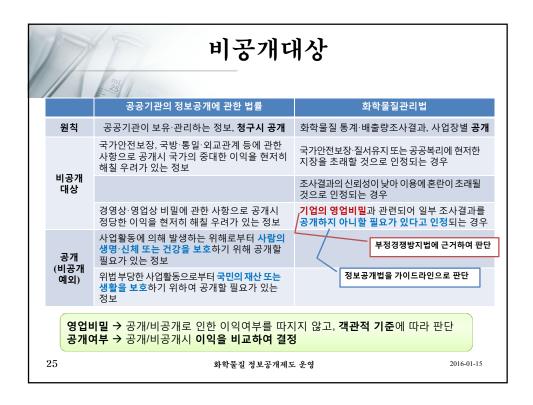


공개정보 예시										
	7	P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1				
제품명	성분명	함량(%)	유해화학물질 여부	제조·사용 시설 위치	보관·저장 시설 위치	보관·저장 최대 규모				
신너-1 □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벤젠 (71-43-2)	30%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지하	02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벤젠(71-43-2) □ 톨루엔(108-88-3) □ <mark>할로겐화합물</mark> ■ 아세톤(67-64-1) □	%		□ 실내 ■ 실외	□ 실내 □ 실외 ■ 지하	02				
제품·물질의 명칭이 영업비밀인 경우, ① 일반명칭(예: 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등)으로 표시 ② 일반명칭으로 표시할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면 공란 또는 "영업비밀" 등으로 표시 '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18년부터 공개 가능										
21	화학물	<u> </u>	세도 운영			2016-0	01-15			









영업비밀 인정기준-1

-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 🛱 경제성·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 정보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영업비밀 인정기준-2

- 🚨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 정보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 정보접근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27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비공지성 사례 -1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 세부적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업체가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도 비공지성은 인정
 - → 소수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경우도 비공지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른 회사제품을 통해 **극히 개략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어도**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6772 판결[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가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도 비공지성이 인정되며, 타 회사제품의 Datasheet 등에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인정

비공지성 사례 - 2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구성성분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도,
 - 그 함량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비밀관리성을 가지면 영업비밀로 인정
 - → 각 성분이 알려져 있어도 함량(조성)에 대한 비공지성은 인정 될 수 있음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5751 판결[손해배상(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는 영업비밀

 29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비공지성 사례 - 2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 경쟁회사가 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보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됨
 -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로 해당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영업 비밀로 인정됨
 - → A제품을 분석하여 상대회사가 A'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A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진 것 때문이 아니라면 A제품의 비공지성은 인정될 수 있음

30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비공지성 사례 - 3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않 광고 등으로 특정성분의 포함여부 및 함량이 공개된 경우에는 비공지성으로 인정되지 못함
 - OO세제에 특정성분이 00% 이상 함유되어 기능이 탁월하다는 광고가 있었다면 비공지성 인정 못함

서울고등법원 1998.07.07, 선고 97나15229 판결[손해배상(지)]

적정온도를 알려주는 맥주캔의 열감지 테이프 등은 판매마케팅으로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이는 비공지성으로 인정받지 못함

 31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비밀관리성 사례 - 1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 (판례 1) 비밀관리성 인정
 - 2차례에 걸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 회사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 CCTV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통제,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판례 2)

- 특정·구별되는 정보에 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경우

비밀관리성 사례 - 2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판례 3)

- 문서나 파일에 비밀문서 표시를 하고,
- 정보보호규정과 외부 발송메일 관리요령(지침) 마련하여 직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 직원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노력이 인정됨

₩ (판례 4)

-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 특정인이 해당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됨

33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비밀관리성 사례 - 3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판례 5)

-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를 외부인이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고 하더라도
-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됨
- → 외부자에게 공개된 적이 있더라도 해당 공개가 보안규정·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비밀관리성으로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판례 1)

• 취업규칙에서 직원에게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문서 배포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못함

₩ (판례 2)

- 비밀유지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고
-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은 점
- 연구원이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정보를 별다른 제한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비밀관리성으로 인정하지 못함

 35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경제성/유용성 사례 - 1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 영업활동에 바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단계가 아니고,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 집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유용성 인정
- →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경제성/유용성 인정

경제성/유용성 사례

본 사례는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유추해석한 것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심의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상당기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된 정보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

대법원 2011.07.28, 선고2010도9652 판결[업무상배임]

○ ○ ○ 이 당해 연도 경영실적과 투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신사업 확장, 해외기술협력, 신제품 개발 투자, 대리점 매출 활성을 위한 금액할인 기준 등을 파악·수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이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37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미국 EPA의 영업비밀 심의기준 영업비밀 심의신청 서류의 작성

미국사례

- ☼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싶다면, 정해진 양식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영업비밀 신청범위는, 대체로 화학물질 명칭(CAS No.)
 - 첨부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않음
- ™ 제출서류 : 보고서 + 첨부서류(Substantiation form)
 - 첨부서류는 답변서 형태로 구성됨
 - Part 1(일반사항), Part 2(사업장정보), Part 3(질의응답), Part 4(확인서명)

 39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미국 EPA의 영업비밀 심의

Part 1(일반사항), Part 2(사업장 정보)

- ☎ 제출하는 보고서의 종류
 - 비상대응계획, Tier-I/II, MSDS, TRI
- ™ 제출년도, 삭제본 여부, 신청대상 항목(물질명칭)
- 🚨 사업장 명칭, 주소, 등록번호



40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Part 3(질의응답) - 1

- ☑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수단을 설명하고, Part 3. Respuere to Selectation Que 향후에도 지속할지 여부를 표시
- ☎ LEPC,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근로자 외에 비밀유지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
- ☑ 공개되거나, 비밀로 주장/거부당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영업비밀 주장·거부 내역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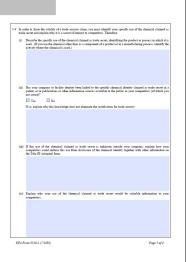
41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미국 EPA의 영업비밀 심의

Part 3(질의응답) - 1

☼ 사업장 내에서 영업비밀로 신청하는 물질의 특정한 용도 (specific use)와 경쟁자에게 비밀로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



42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Part 3(질의응답) - 2

- □ 특정용도 설명
 -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해 설명
 -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작업을 명시
 - 해당 물질이 특허나 출판물 등으로 공개되었는지 여부
 - 공개되었다면, 특허·출판물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 보고서에서 해당 물질의 명칭을 지우지 않았을 때, 경쟁사가 어떻게 그 용도를 추론할 수 있을지 설명
 - 해당물질의 용도가 왜 경쟁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지 설명

43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미국 EPA의 영업비밀 심의

Part 3(질의응답) - 3

-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물질을 공개하면 경쟁적 우위를 잃어버릴 위험과 이유
- 해당 물질이 제품, 부품, 또는 환경으로의 유출 등을 통해 일반대중이나 경쟁사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 해당 물질을 확인(제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화학적 분석 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적 요소
 - 예: 해당물질이 순수물질인지 다른 물질과 혼합된 상태인지 등

33 Salacine dis since of the lasts is not competing points that stall labely made from discloses of the specific sharmed density, and indicates the possible in discloses.

34 (i) The other states of the channel closued in wale soone enables in the police or your competition in product, which, is communicated delated.

35 (ii) The other states of the channel closued in wale soone enables in the police or your competition in product, which, is communicated delated.

35 (iii) Disclose the force of the channel delate in the control of the channel closued in such sound that the channel of the channel of

44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Part 4(확인서명)

- 🚨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증하며,
- ☼ EPA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할 것이며,
- □ 만일 거짓으로 판명되면 영업비밀 신청건수당 \$2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확인서명

Part C. Certification (Bred and sign affor completing all sections)

Londy using peaks yellow that I have personally examined the obscurates whereast in the and all straked documents in true, recently the personal perso

45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

2016-01-15

미국 EPA의 영업비밀 심의

- 🚨 제출서류는 무삭제본과 삭제본 모두 제출
 - 삭제본에는 화학물질명칭 등은 generic class or category name로 기재하고, 다른 항목은 삭제하여 제출

Generic class name or category name

○||: toluene diisocyanate → organic isocyanate

- MSDS는 무삭제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특히 Tier-I/II report는 무삭제본과 삭제본 보고서 전체를 제출

46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